

「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6. 15(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)

나. 회부일자 : 2015. 6. 17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5. 6. 22(월) 제21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김진영)

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시험 편집요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」, 공무원여비 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 함에따라,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시협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

##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급기준)**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시험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은 해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「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조(지급대상)**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·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.

**제4조(지급제외)**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5조(여비)**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